패밀리오피스 자산 구성 속의 가상자산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제IV장의 지정 투자자산 문제는 상업 펀드보다 가상자산 패밀리오피스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가문의 재산이 대부분 그 재산을 만든 토큰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80%가 이더이고 20%가 싱가포르달러 예금인 패밀리 펀드는 지정 투자자산이 그 가치의 20%에 불과합니다. 총액이 5,000만 싱가포르달러라면 지정 투자자산은 1,000만 싱가포르달러이며, 펀드는 Section 13O의 2,000만 싱가포르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펀드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가문도 싱가포르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패밀리 펀드는 수익적 성격의 소득에 대해 일반 회사로서 과세됩니다.[1]

실무에서는 세 가지 대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토큰을 인센티브 펀드 밖, 즉 가족 구성원 본인 명의나 인센티브가 없는 별도 회사에 보유하고, 토큰 매각 대금을 지정 투자자산에 투자하여 인센티브 비히클에 출자하는 방법입니다. 토큰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가족 구성원은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고 해외 원천 소득은 Section 13(7A)(이 편 제II장)에 따라 면세됩니다. 남는 문제는 스테이킹 보상뿐입니다. 둘째는 상장 ETP와 파생상품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을 통해 토큰 익스포저를 지정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대형 패밀리 오피스는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대해 이를 활용합니다. 셋째는 Section 13U 펀드가 유동성 있는 증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자매회사가 토큰을 보유하는 분리 구조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자매회사는 매매차익에 대해 17%를 내는데, 장기 보유하는 가문이라면 보통 그 금액은 없습니다.

사례

한 창업자가 2024년 싱가포르 거래소 지분을 9,000만 미국달러에 매각했으며, 그중 3,000만 미국달러는 비트코인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의 자문인은 투자 전문인력 2명(그중 1명은 외부 채용)을 둔 운용회사를 설립합니다. 현금은 Section 13U VCC에 출자되어 글로벌 증권과, 자본 배치 요건을 위한 싱가포르 상장 주식에 투자됩니다. 비트코인은 창업자 본인의 콜드 스토리지에 남습니다. 본인의 장기 보유에서는 싱가포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VCC의 소득은 면세됩니다. 운용회사는 VCC로부터 받는 보수로 운영되며 소액의 이익에 대해 17%를 냅니다. 창업자는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lobal Investor Programme)의 패밀리오피스 옵션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며, 이때 VCC의 자산이 산정에 포함됩니다.

주

1. Income Tax Act 1947, s. 43(1)(법인세율 17%) 및 s. 43(6)(부분 면세). 펀드의 토큰 이익이 수익적 성격인지는 이 편 제I장의 영업의 징표(badges of trade)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